

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1. 9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1. 9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1. 1. 17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원미구 보건소장 임문빈)

가. 제안이유

○ 지역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업무 범위 중 일부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을 도모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보건소의 업무 중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2조의제1항)

○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,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함(안 제2조제3항)

○ 시장은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2조제3항)

○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도록 함(안 제2조제4항)

○ 시장은 계약체결된 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3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실질적으로 정원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지	○ 정원은 증가되지 않으나 인원은 증가됨
○ 일용적 채용시와 인건비의 차이는	○ 동일하게(월 300만원 정도) 책정되도록 규칙으로 정하겠음
○ 현재 채용 중인 의사가 재채용되면 일부 한의사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을 텐데	○ 현의사에게 우선권을 주되 유능한 의사채용을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음
○ 현재 소사구에는 한방진료가 없는데 조례 안 통과 후에는 소사구에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지	○ 가능함
○ 치매전문치료사도 대행가능한지	○ 가능함

- | |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무대행시 일반병원과의 마찰에 대한 계획은 ○ 각 사회복지관의 한방물리치료를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○ 타·시군에 비해 조례제정이 늦은 이유는?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천시 특성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음 ○ 관리의료인은 자체선임하나 복지관과 협의 후 가능토록 하겠음 ○ 정원 조정을 위한 정규직 추진 과정에서 늦어졌음 |
|---|--|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지역보건법 제24조규정(권한의 위임)에 의거 위탁업무 가능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수정안의 요지

- 별첨 참조

6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433호
의결년월일	2001. 1. 19 (제84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0. 19

제출자 : 행정복지위원장

수정이유

-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의 부칙 제2항 “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”는 현조례의 취지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의 폐지안이 요구되어 삭제

주요골자

- 부칙 제2항 “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”를 삭제

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제2항 “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”를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
② (다른 조례의 폐지) 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	(삭제)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대행 및 경비) ①시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 법 제9조제13호, 제16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1호,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(이하 “의료인”이라 한다)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,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한다.

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(이하 “업무대행경비”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,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(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·감독)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된 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